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28일, 송옥주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11.) 상정, 축조심사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8.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9. 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옥주의원)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여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 완료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유실·유기 등 동물 개체 수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분양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 또는 기증·분양하는 동물이 개·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실·유기 동물 개체 수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증가하고 있는 유실·유기 동물로부터 공공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4항 및 제45조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임재금)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 및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동물원 등에 기증·분양하는 동물에 대하여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하거나 그 수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45조제3항 신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면서,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유실·유기 동물의 증가 문제와 발정기에 따른 동물의 건강 및 관리문제 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중성화(中性化) 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성화 수술은 생식샘과 관련기관 등을 제거하여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수술로, 암컷의 경우 난소절제술(ovariectomy, OVE) 또는 난소자궁절제술(ovariohysterectomy, OHE)의 방법이 시행되고 수컷의 경우 고환절제술(orchietomy)이 시행됨.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성화 수술의 대두 배경 중 특히 유실·유기 동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4조의 일반적인 지원규정에 근거하여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지원(3741-338)” 사업을 통해 유실·유기 동물, 또는 그 잠재적 후보군이라 할 수 있는 실외사육견(마당개) 및 길고양이 대상의 중성화수술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일각에서는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사업의 실집행률이 2022년 61.6%, 2023년 79.9%로 낮고, 지원 마릿수가 2025년 본예산 편성 기준 17,550마리에 불과한바, 유실·유기 동물의 지속적인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 마릿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이나 현행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증·분양하는 동물 중 개·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유기·유실 동물의 지속적인 발생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생각 됨.

개정안을 조문별로 검토해 보면,

첫째, 안 제16조제4항은 중성화수술 및 그 비용 지원대상을 등록대상동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대상이 실외사육견에 한정되지 않고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이기만 하면 모두 포함되는바, 수술 및 비용지원 대상의 범위의 적절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등록된 개는 2023년 기준 3,244,234마리로서, 2025년 예산에 반영된 중성화 지원 실외사육견 마릿수인 17,550마리보다 많은 수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또한, 등록대상동물은 소유자가 있는 동물이고, 중성화 수술은 해당 동물

의 생식기능을 비가역적으로 제거하는 것인바,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선행될 필요가 있는 소유자의 동의 또는 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안 제45조제3항은 기증·분양하는 동물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성화수술을 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현재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현행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기증·분양 요건을 조례로 정하면서, 기증·분양하는 동물이 중성화 수술을 받는 것을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기증·분양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성화수술을 직접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동물을 기증·분양받는 자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6조제4항에서는 중성화 수술 및 지원 대상으로 등록대상동물, 즉 ‘개’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45조제3항에서는 그 대상을 ‘개·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하여 고양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의 동물 역시 포함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바,

기증·분양하는 동물과 그 외 일반적인 반려동물 등에 대하여 중성화 수술 및 비용 지원 대상의 범위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안 제16조제4항 및 안 제45조제3항에 따라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받는 주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원받는 대상을 명확히 명시하기 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16조제4항의 경우 중성화 수술의 대상이 등록대상동물이므로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받는 주체는 현행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주체인 “소유자등”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안 제45조제3항의 경우 중성화 수술의 대상이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개·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므로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받는 주체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증·분양받은 자”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은 개체 수 관리·조절이 어려운 동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등 소유자에 의해 개체 수 관리가 가능한 등록대상동물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할 필요성은 낮으므로, 안 제16조제4항의 신설에 신중할 필요하다는 의견임.

한편, 안 제45조제3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 등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중성화 수술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음